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46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2.

발 의 자 : 김소희 · 서일준 · 이현승
김승수 · 성일중 · 최형두
우재준 · 김선교 · 박수민
추경호 · 윤상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상속인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,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본인의 장례 및 제사주재자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
하지만, 현행법은 위임인이 사망한 경우 위임계약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사망 후 장례나 제사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.

이에 위임계약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경우 위임인의 사망 후에도 종료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본인의 장례 및 제사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상속인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통해 장례 또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람이 묘토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하여 무연고사망자의 사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고 함(안 제690

조 제2항 및 제1008조의3제2항 신설 등).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경우 위임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지 아니한다.

제1008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상속인이 없는 사람은 계약을 통하여 장례 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자가 제1항의 소유권을 승계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90조(사망·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)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.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. <u><신 설></u>	제690조(사망·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경우 위임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지 아니한다.
第1008條의3(墳墓 등의 承繼) 墳墓에 속한 1町步 이내의 禁養林野와 600坪 이내의 墓土인 農地, 族譜와 祭具의 所有權은 祭祀를 主宰하는 者가 이를 承繼한다. <u><신 설></u>	第1008條의3(墳墓 등의 承繼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상속인이 없는 사람은 계약을 통하여 장례 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자가 제1항의 소유권을 승계한다.